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민병덕 · 한민수 · 김영진
박해철 · 서영교 · 김승원
김남근 · 유동수 · 김현정
김문수 · 복기왕 · 전용기
강득구 · 김남희 · 송기현
박찬대 · 진성준 · 최혁진
조계원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

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의 규정”을 “제6항까지”로 한다.

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,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5조제2항제23호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“제37조제4항”을 “제3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유로 정보

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, 동의 철회에 따른 과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<u>④·⑤</u> (생략)	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<u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, 동의 철회, 처리정지의 거절,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<u>⑦ -----제6항까지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75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22. (생략) 23. 제37조제3항 또는 <u>제5항</u>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. ~ 27. (생략)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9의2. (생략) 10. 제35조제3항·제4항, 제36조제2항·제4항 또는 <u>제37조제4항</u>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.·12. (생략) ⑤ (생략)	----- -----. 1. ~ 22. (현행과 같음) 23. -----<u>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4. ~ 2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<u>제37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1.·12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